

『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낙관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17. 10. 17.)에 따라 구미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범위와 예외사항 (안 제3조)
-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(안 제4조)
-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와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